제2차산업경제위원회
2015.7.3(금) 10:00

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신선기

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6월 25일

3. 제안 이유

○ 도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,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이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충청북도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, 숙련기술인 우대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명장 정의 (안 제2조)

나. 매년 5명 이내로 충청북도 명장 선정계획 (안 제3조)

다. 명장 자격요건 (안 제4조) 및 추천(안 제5조)

라. 예우 및 지원 (안 제6조) 및 위원회 구성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○ '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'은 도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,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이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숙련기술인 우대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함.

○ 다만, 안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한다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금액과 기간이 적절한지, 안 제4조제4호의 충청북도 명장과 도지정문화재(무형문화재 보유자) 및 대한민국명장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.